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에서 설치한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영문명 : HGGC, Hawaii Gachon Global Center, 이하 ‘센터’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03.01.)

제2조(업무)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01.)

1.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브랜드화 모색, 개발 및 연구
2. 가천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의 모색, 개발 및 연구
3. 가천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의 시행
4. 가천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
5. 기타 센터 브랜드화와 가천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

제3조(소재) 본 센터는 미국 하와이(주소 : 315 Saratoga Road, Honolulu, Hawaii 96815)에 둔다. (개정 2015.03.01.)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센터에는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팀을 둔다. (개정 2015.03.01.)

제5조(센터장)①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둔다. (개정 2015.03.01., 2016.08.30.)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③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및 조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03.01.)

제6조(직원) ①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팀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 직원을 둔다. (개정 2015.03.01.)

4-1-18~2 제4편 부속기관

② 센터의 운영을 위해 현지에 사감을 두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15.05.26.)

③ 센터의 관리를 위해 외부 업체와 계약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01.)

제7조(조교) 센터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조교를 둘 수 있다.

제8조(연수대상) 센터에서 개설하는 강좌 등의 연수생은 본 대학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03.01.)

제9조(연수생 의무) ①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1.)

1. 본 대학교 규정 및 학칙
2. 센터 준수사항
3. 기타 학교 및 센터에서 정하는 시행규칙

②연수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설 2016.08.30.)

제10조(납입금) ①연수생은 소정의 납입금을 등록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과오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료증 등) 센터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연수과정과 관련한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의 2(방문 및 사용절차)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청서(소관부서 서식)를 국제교류협력팀으로 제출하여 허가(결재)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9.08.29.)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0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03.01.)

③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01.)

1. 센터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련 부속기관과의 협조사항
 3.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외부기관과의 협조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⑥위원회의 회의는 각 학년도 초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 4 장 재정과 회계

제13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03.01.)

제1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로 한다. (개정 2015.03.01.)

제15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3.01.)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1-18~4 제4편 부속기관

(별지서식 제 1호)(삭제 2019.08.29.)